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엑스게이트
○ 대상물품명 : AXGATE 1300S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38,0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6월 25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

제조사명 ㈜엑스게이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제 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텍넷(주)
○ 대상물품명 : SFP-10G-SR-S=*12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7,92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7월 6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

제조사명(공급사) 텍넷(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제 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텍넷(주)
○ 대상물품명 : SFP-10G-SR-S=*12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7,92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7월 6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

제조사명(공급사) 텍넷(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6 년 제 2 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 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델 인터내셔널(주)

○ 대상물품명 : Dell UnityXT380(SAN 스토리지 라급): 49TB(RAID6),
Dell UnityXT380(NAS 스토리지 다급): 70TB(RAID6)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2026 년 제 2 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2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 3 조(협약금액) 제 2 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80,000,000 원(VAT 포함)으로 한다.

제 4 조(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7 월 3 일

발주기관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

제조사명 델 인터내셔널(주) (인)